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무과-15943
등록일자	2015.6.16.
결재일자	2015.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직위대리	구청장
권해주	김애영	김병희	이창훈	주윤중	06/16 신연희
협조자					

- 재정운영의 환류를 위한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결과 보고

I 추진개요

- 검사기간 : 2015. 5. 14. ~ 6. 12.(30일간)
- 검사위원 : 구의원1, 공인회계사4
- 결산검사 시 주요검토 사항
 -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및 부합여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
 - 회계원칙 및 회계처리 과목분류 적정성 검토
 - 세입·세출결산, 예산 외 거래와 관련 예산회계결산 및 부속서류 검증

II 검토결과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회계별	세입결산액①	세출결산액②	차 인 잔 액 (세계잉여금) ③=①-②	다음연도 이월액 ④		순세계잉여금 ⑤=③-④
				이월 사업비 (명시+사고)	보조금 사용잔액	
합 계	749,155,411,741	573,534,028,631	175,621,383,110	5,118,466,610	5,416,021,036	165,086,895,464
일반회계	674,856,332,942	550,221,039,231	124,635,293,711	5,118,466,610	5,389,528,882	114,127,298,219
특별회계	74,299,078,799	23,312,989,400	50,986,089,399	0	26,492,154	50,959,597,245

2015. 6. .

강 남 구
(재 무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결산감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재무과-3803, 2015.2.10.)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보고(재무과-12713, 2015.5.12.)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공무원 및 전구민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0)</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0)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0)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 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구청 실시 																											
전문가 자 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p>해당없음</p>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결과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결산서(안)에 대하여 계산의 착오,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검사를 통해 우리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결과임.

I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II 추진개요

- 검사기간 : 2015. 5. 14. ~ 6. 12.(30일간)
- 검사위원 : 구의원1, 공인회계사4
 - 이경옥 구의원(대표위원), 이석훈·최청운·장원택·김철현 회계사
- 결산검사 시 주요검토 사항
 -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및 부합여부
 -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 회계원칙 및 회계처리 과목분류 적정성 검토
 - 세입·세출결산, 예산 외 거래와 관련 예산회계결산 및 부속서류 검증

Ⅲ 추진결과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651,387,610,130원(전년도 이월금 6,359,629,130원 포함)에 대하여
 - 수납액은 749,155,411,741원이며,
 - 지출액은 573,534,028,631원이며,
 - 차인잔액은 175,621,383,110원으로 구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645,027,981,000	6,359,629,130	651,387,610,130	749,155,411,741	573,534,028,631	175,621,383,110
일반회계	604,997,692,000	6,359,629,130	611,357,321,130	674,856,332,942	550,221,039,231	124,635,293,711
특별회계	40,030,289,000	0	40,030,289,000	74,299,078,799	23,312,989,400	50,986,089,399
주차장	33,227,207,000	0	33,227,207,000	67,222,222,341	18,331,236,670	48,890,985,671
의료급여	722,967,000	0	722,967,000	726,205,314	667,242,090	58,963,224
기반시설	6,080,115,000	0	6,080,115,000	6,350,651,144	4,314,510,640	2,036,140,504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2014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 외 19건인 5,118,466,610원으로서
 - 명시이월 : 4건 3,054,690,000원
 - 사고이월 : 16건 2,063,776,610원으로 검토자료와 일치
- 기타 물품 및 공유재산, 채권현재액, 기금, 부속서류 검토자료 일치
 - 기금 현재액 : 225,689백만원
 - 채권 현재액 : 28,242백만원
 - 공유재산현재액 : 4,181,152백만원
 - 물품증감 현재액 : 7,738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 13,141백만원

□ 결산검사 수범사항, 개선 및 건의(권고)사항 목록

수범1건, 개선1건, 건의(권고)24건

연번	구분	내용	소관부서
1	수범사항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향상	주차관리과
2	건의(권고)사항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방안 마련	기획예산과
3	건의(권고)사항	연말의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과 수의계약	기획예산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4	건의(권고)사항	예산을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기획예산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5	개선사항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개선사항	일자리정책과
6	건의(권고)사항	강남복지재단의 설립과 정착화 방안	복지정책과
7	건의(권고)사항	강남구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보완	노인복지과
8	건의(권고)사항	노인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과
9	건의(권고)사항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대상 업체 선정방법 개선	청소행정과
10	건의(권고)사항	에너지 절감 장려기금 관리의 부적절	환경과
11	건의(권고)사항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현실적인 예산 편성	재난안전과
12	건의(권고)사항	주차장 특별회계 개편 방안 마련	교통정책과
13	건의(권고)사항	민간투자사업 계획의 잘못된 사례(예산낭비, 민간사업자의 손실초래)	교통정책과
14	건의(권고)사항	서울시 보조금 반환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 개선	치수과
15	건의(권고)사항	포상금 지급의 합리성 보완	총무과
16	건의(권고)사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처리 방안	총무과
17	건의(권고)사항	강남구 생활안정기금의 상황 및 연체금 관리 철저히	총무과
18	건의(권고)사항	강남구청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처리 방안 수립 요청	총무과
19	건의(권고)사항	문화센터운영 관련 물품구입의 회계처리 개선	자치행정과
20	건의(권고)사항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인건비 예산편성 철저히	교육지원과
21	건의(권고)사항	강남구청뉴스 DM발송 작업대금 주택과 지급	공보실, 주택과
22	건의(권고)사항	충분한 사업시행기간의 확보 필요성	관광진흥과, 건축과
23	건의(권고)사항	강남문화재단의 수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24	건의(권고)사항	불용될 것이 명백한 예산은 감편성해야	보건행정과
25	건의(권고)사항	BC카드 통장의 잔액 검증 필요	전부서
26	건의(권고)사항	시책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의 사용내역 기록보완	전부서

IV

향후계획

-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항, 개선 및 건의(권고)사항 전부서 시달
-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구의회 제출 - 2015. 6월말
- 결산 승인 : 2015년도 제1차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시
 - 일 정 : 제1차 정례회의 시(2015. 7월)
 - 방 법 : 상임위원회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본회의 승인
- 결산서 공개
 - 보 고 : 의회 승인을 얻은 후 5일 이내 → 서울특별시
 - 공 개 : 의회 승인을 얻은 후 30일 이내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첨부 : 1.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 2014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1부.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현황 1부. 끝.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제82조 (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 (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사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9.12.18>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9.12.18>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09.12.18>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09.12.18>

3. 공인 회계사

4.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자. <개정 2009.12.18>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대표의원) 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② 대표의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개정 2009.12.18>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12.18>

④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검사위원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개정 2009.12.18>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9.12.18>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09.12.18>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2.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 된 때 <개정 2009.12.18>

4.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③ 의회는 감사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의 재개) 감사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향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9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감사위원회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국내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②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감사 개시일부터 감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③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 아닌 감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18>